

『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정희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,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 및 야외주차장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-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주차장법」 제19조
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1조의2
 -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유주차장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구미시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유주차장 지정 충족 요건,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운영,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등 주차 공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공유주차장의 신청 및 선정,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지침 및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주차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유주차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공유주차장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또한 주차 이용시간 미준수, 주차장 소유주 권리와 책임 범위 모호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주차장 소유자들에 대한 사업의 철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주차공유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